제226회 제1차 정례회
광 진 구 의 회

2018 회계연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

2019. 6. 12.

복지건설위원회
전 문 위 원

2018 회계연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

1. 복지건설위원회 세입·세출 결산 현황

가. 세입결산

(단위 : 원)

구 분	예산현액 (가)	징수결정액 (나)	실제수납액 (다)	불납결손액 (라)	미수납액 (나)-(다)-(라)	수납비율	
						예산대비 (다)/(가)	결정대비 (다)/(나)
합 계	221,678,817,000	233,624,235,570	222,635,603,480	279,529,590	10,709,102,500	100.4 %	95.3 %
일반회계	206,715,581,000	210,268,203,310	207,482,121,900	6,495,000	2,779,586,410	100.4 %	98.7 %
특별회계	14,963,236,000	23,356,032,260	15,153,481,580	273,034,590	7,929,516,090	101.3 %	64.9 %

나. 세출결산

(단위 : 원)

구분	예산현액 (가)	지 출 액 (나)	다음연도 이월액(다)			집행잔액 (가)-(나)-(다)
		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
합 계	344,714,466,520	306,048,076,562	12,102,200,500	9,213,159,530	2,889,040,970	26,564,189,458
일반회계	329,751,230,520	297,578,639,462	12,081,509,500	9,213,159,530	2,868,349,970	20,091,081,558
특별회계	14,963,236,000	8,469,437,100	20,691,000	0	20,691,000	6,473,107,900

2.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세부 결산현황

가. 세입 세목별 결산 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	예산 현액 (가)	징수 결정액 (나)	실제 수납액 (다)	불납 결손액 (라)	미수납액 (나)-(다)-(라)	수납비율	
							예산대비 (다)/(가)	결정대비 (다)/(나)
합 계		221,678,817,000	233,624,235,570	222,635,603,480	279,529,590	10,709,102,500	100.43%	95.30%
일반회계	소 계	206,715,581,000	210,268,203,310	207,482,121,900	6,495,000	2,779,586,410	100.37%	98.67%
	세외수입	15,218,638,000	22,091,706,390	19,305,624,980	6,495,000	2,779,586,410	126.86%	87.39%
	지방교부세	3,268,000,000	3,268,000,000	3,268,000,000	0	0	100.00%	100.00%
	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	8,877,508,000	8,877,508,000	8,877,508,000	0	0	100.00%	100.00%
	보 조 금	179,351,435,000	176,030,988,920	176,030,988,920	0	0	98.15%	100.00%
특별회계	소 계	14,963,236,000	23,356,032,260	15,153,481,580	273,034,590	7,929,516,090	101.27%	64.88%
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424,206,000	577,174,590	577,174,590	0	0	136.06%	100.00%
	주차장 특별회계	14,539,030,000	22,778,857,670	14,576,306,990	273,034,590	7,929,516,090	100.26%	63.99%

나. 분야별 세출결산 현황

(단위 : 원)

구분		예산현액 (가)	지 출 액 (나)	다음연도 이월액(다)			집행잔액 (가)-(나)-(다)
			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	
합 계		344,714,466,520	306,048,076,562	12,102,200,500	9,213,159,530	2,889,040,970	26,564,189,458
일반회계	소 계	329,751,230,520	297,578,639,462	12,081,509,500	9,213,159,530	2,868,349,970	20,091,081,558
	일반 공공행정	1,944,909,570	1,850,650,830	-	-	-	94,258,740
	공공질서 및 안전	1,899,281,000	1,477,343,910	240,000,000	240,000,000	-	181,937,090
	환경보호	39,059,704,720	36,752,543,460	119,390,100	60,000,000	59,390,100	2,187,771,160
	사회복지	220,906,563,170	204,723,088,607	6,660,017,950	5,985,521,530	674,496,420	9,523,456,613
	보건	14,569,712,000	12,219,567,135	785,292,640	568,506,000	216,786,640	1,564,852,225
	산업·중소기업	343,459,000	308,875,950	-	-	-	34,583,050
	수송 및 교통	12,385,881,340	7,533,161,020	2,526,383,010	1,255,000,000	1,271,383,010	2,326,337,310
	국토 및 지역개발	14,712,752,720	11,398,895,830	1,750,425,800	1,104,132,000	646,293,800	1,563,431,090
	기타	23,928,967,000	21,314,512,720	-	-	-	2,614,454,280
특별회계	소 계	14,963,236,000	8,469,437,100	20,691,000	-	20,691,000	6,473,107,900
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424,206,000	418,850,590	-	-	-	5,355,410
	주차장 특별회계	14,539,030,000	8,050,586,510	20,691,000		20,691,000	6,467,752,490

(단위 : 원)

구분		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						
		계	보조금 반납금1)	보조금 정산잔액 2)	예산 절감액	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	지출잔액	예비비
합 계		26,564,189,458	6,378,948,295	5,297,663,755	568,230,240	2,035,368,790	12,048,978,378	235,000,000
일반회계	소 계	20,091,081,558	6,366,099,365	5,172,377,945	480,168,840	1,249,568,790	6,822,866,618	-
	일반 공공행정	94,258,740	-	-	-	-	94,258,740	-
	공공질서 및 안전	181,937,090	6,897,638	341,432	-	-	174,698,020	-
	환경보호	2,187,771,160	76,854,370	748,306,040	164,950,140	14,220,600	1,183,440,010	-
	사회복지	9,523,456,613	5,239,829,179	3,314,425,516	27,382,270	17,775,740	924,043,908	-
	보건	1,564,852,225	704,221,324	494,321,521	70,945,450	6,500,300	288,863,630	-
	산업·중소기업	34,583,050	2,812,590	570,450	-	420,000	30,780,010	-
	수송 및 교통	2,326,337,310	7,986,150	123,773,750	1,092,000	-	2,193,485,410	-
	국토 및 지역개발	1,563,431,090	174,512,634	483,884,266	203,198,650	152,778,000	549,057,540	-
	기타	2,614,454,280	152,985,480	6,754,970	12,600,330	1,057,874,150	1,384,239,350	-
특별회계	소 계	6,473,107,900	12,848,930	125,285,810	88,061,400	785,800,000	5,226,111,760	235,000,000
	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	5,355,410	5,353,550	-	-	-	1,860	-
	주차장 특별회계	6,467,752,490	7,495,380	125,285,810	88,061,400	785,800,000	5,226,109,900	235,000,000

1) 국·시비 보조금 집행잔액
2) 국·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중 국·시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구비 잔액분

다. 세입금 불납결손액 내역

(단위 : 원)

구 분	불납 결손액	사 유 별								
		배분 금액 부족	체납 처분 중지	시효 소멸	행방 불명	무재산	채무자 회생법에 의한 면제	국세 결손	평가액 부족	기타
합 계	279,529,590	-	-	279,529,590	-	-	-	-	-	-
일반회계	6,495,000	-	-	6,495,000	-	-	-	-	-	-
특별회계	273,034,590	-	-	273,034,590	-	-	-	-	-	-

※ 불납결손액이란 ? [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(불납결손의 결정) 참조]

법령의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 발생되는 금액

※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불납결손 해당부서

- 일반회계 : 교통지도과 - 특별회계 : 교통지도과

라.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

(단위 : 원)

구 분	미수납액	사 유 별									
		무재산	행방 불명	납세 태만	폐업 또는 부도	채무자 회생법 에 의한 유예	격리 또는 입원	소송 계류	국외 이주	자금 압박	기타
합 계	10,709,102,500	1,228,184,130	210,974,510	8,014,065,280	85,764,440	991,800	100,000	-	9,387,610	303,156,800	840,865,650
일반회계	2,779,586,410	1,228,184,130	210,974,510	84,549,190	85,764,440	991,800	100,000	-	9,387,610	303,156,800	840,865,650
특별회계	7,929,516,090	-	-	7,929,516,090	-	-	-	-	-	-	-

※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미수납액 해당부서

- 일반회계 : 복지정책과, 사회복지장애인과, 어르신복지과, 가정복지과, 청소과, 환경과, 주택과, 도시계획과, 건축과, 부동산정보과, 공원녹지과, 도시안전과, 건설관리과, 도로과, 교통행정과, 교통지도과, 보건정책과, 보건위생과
- 특별회계 : 교통지도과

마. 세출예산 집행잔액 내역

(단위 : 원)

구분	집행잔액	사 유 별					
		보조금 반납금3)	보조금 정산잔액4)	예산 절감액	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	지출잔액	예비비
합 계	26,564,189,458	6,378,948,295	5,297,663,755	568,230,240	2,035,368,790	12,048,978,378	235,000,000
일반회계	20,091,081,558	6,366,099,365	5,172,377,945	480,168,840	1,249,568,790	6,822,866,618	-
특별회계	6,473,107,900	12,848,930	125,285,810	88,061,400	785,800,000	5,226,111,760	235,000,000

바. 예산의 이용 · 전용 및 이체

- 예산 이용 내역 : 없음

- 예산 전용 내역 : 총 5건(일반회계 4건, 특별회계 1건)

(단위 : 원)

예 산 과 목		전 용 액	사 유
회 계	전용 통계목		
합 계		362,000,000	
(일반회계) 사무관리비 → 기타자본이전		60,000,000	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 관련 건물임차비용
(일반회계) 사회복지사업보조 → 기간제근로자등보수		8,000,000	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관련 등굣길 어르신 교통봉사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비 부족분
(일반회계) 사무관리비 → 자산및물품취득비		48,000,000	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 사업 관련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기 설치에 대한 부족분
(일반회계) 사무관리비 → 시설비		56,000,000	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 사업 관련 광장집하장 이전비용에 대한 부족분
(특별회계) 자치단체간부담금 →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		190,000,000	50+ 캠퍼스 지하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서울시로 구 분담금을 직접 교부하기 위한 금액

- 예산 이체 내역 : 178건, 40,414백만원(사유: 조직개편)

3) 국·시비 보조금 집행잔액

4) 국·시비 보조금 매칭사업 중 국·시비 집행잔액을 제외한 구비 잔액분

※ 예산의 “이용·전용·이체” 비교

○ **이용** :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사업 사이에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

○ **전용** : 인건비·시설비를 제외한 동일 정책사업 내의 세부사업 또는 통계목 등의 경비를 상호 사용하는 것

○ **이체** : 회계연도 중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의 변동이 있는 경우

사. 예비비 지출내역 : 총 4건

(단위 : 원)

회 계	부 서 명	지 출 사 유	지출결정액	지 출 액	지출잔액
합 계			81,531,000	59,923,210	21,607,790
일 반 회 계	소 계	4건	81,531,000	59,923,210	21,607,790
	청소과	자원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	47,500,000	26,642,210	20,857,790
	도로과	매수청구 토지 보상사업	16,843,000	16,843,000	
	보건의료과	방역소독사업	15,750,000	15,000,000	750,000
		보건소 결핵관리사업	1,438,000	1,438,000	

아.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: 총 44개 사업

(단위 : 원)

구 분	사 업 명	이 월 액		
		계	명시이월	사고이월
합 계		11,956,171,350	9,078,159,530	2,878,011,820
일반회계	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등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총 44개 사업	11,956,171,350	9,078,159,530 (24건)	2,878,011,820 (22건)
특별회계	-	-	-	-

※ “명시이월 · 사고이월” 비교

○ 명시이월

-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·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

○ 사고이월

- 세출예산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부대경비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

3. 기금결산 현황

(단위 : 원)

기 금 명	전년도말 조성액 (a)	당해연도증감액 (b=c-d)		당해연도말 조성액(a+b)
		조성액(c)	사용액(d)	
합 계	7,445,274,490	2,211,811,777	2,161,747,290	7,495,338,977
자 활 기 금	1,448,824,820	30,350,618	270,000,000	1,209,175,438
노 인 복 지 기 금	705,889,863	13,222,282	13,280,000	705,832,145
양 성 평 등 기 금	511,968,210	9,438,550	10,000,000	511,406,760
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	469,570,030	58,018,014	35,600,000	491,988,044
옥외광고발전기금	631,043,310	97,068,980	50,774,150	677,338,140
도로굴착복구기금	1,316,989,990	1,095,468,350	704,032,330	1,708,426,010
재 난 관 리 기 금	1,563,893,000	721,922,870	664,267,850	1,621,548,020
식 품 진 흥 기 금	797,095,267	186,322,113	413,792,960	569,624,420

4. 채권·채무 현황

가. 채권현재액

(단위 : 원)

구 분	합 계	일반회계	특별회계	기 금
합 계	1,079,690,505	84,700,000	29,576,165	965,414,340
보증금 채권	84,700,000	84,700,000	-	-
융자금 채권	944,130,505	-	29,576,165	914,554,340
미수금 채권	50,860,000	-	-	50,860,000

※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채권

○ 보증금채권 : 사무실 임대. 기타
○ 융자금채권 : 의료급여대지급금, 민간학자대여금 등
○ 미수금채권 : 기타

나. 채무현재액 :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임문섭)

가) 일반회계

세입결산

○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**예산현액**은 **2,067억1천6백만원**에 **징수결정세액**은 **2,102억6천8백만원**이며, **실제수납액**은 **2,074억8천1백만원**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.7%로 전년도에 비해 0.1% 징수율이 상향되었음.

◂ 과태료 및 범칙금 등 세외수입의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대비 87.39%로 전년도 87.30%에 비해 0.9% 상향되었으며

◂ 과목별 보조금은 지방교부세 32억6천8백만원,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88억7천8백만원 보조금 1,760억3천1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전액 수납되었음.

■ **세입금 불납결손액 내역은 6백5십만원**으로 시효가 소멸된 금액임.

■ **세입금 미수납액**은 무재산, 행방불명, 납세태만, 폐업 또는 부도, 국외이주, 소송계류 등으로 **총 27억8천만원**이 발생함.

■ **세출결산**

○ 예산현액 **3,297억5천1백만원** 중 **2,975억7천9백만원**이 지출되어 예산 현액 대비 90.2%의 집행율로 전년도 집행율 91%보다 0.8% 감소하였으며, 다음연도 이월액 **121억2백만원**을 포함한 실제지출액은 **3,096억6천만원**으로 실제집행율은 93.9%임.

■ **예산이용[5] 내역 : 없음**

■ **예산전용[6] 내역 : 4건**

---

5)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**이용**할 수 없다. 다만, 예산 집행에 필요하여 **미리 예산으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**에는 **이용**할 수 있다.

6) 제49조(예산의 전용)

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**전용(轉用)**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·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,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.

▸ **사회복지장애인과**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사업 관련 건물임차 비용 부족분 **6천만원**

▸ **어르신복지과**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사업 관련 등굣길 어르신 교통봉사 근무기간 연장에 따른 활동비 부족분 **8백만원**

▸ **청소과**의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 사업 관련 인공지능 재활용 회수기 설치에 대한 부족분 **4천8백만원**

▸ **청소과**의 환경미화원 후생복지 향상 사업 관련 광장집하장 이전비용에 대한 부족분 **5천6백만원**

※ 예산의 전용은 예산운영상 나타나는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에 면밀히 계획을 수립한다면 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며, 전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.

예산이체[7] 내역 : 178건, 40,414백만원

※ 2018. 10. 5.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임

예비비 지출내역 : 4건

○ 지출결정액 **8천2백만원**에서 **6천만원**이 지출되어 **2천2백만원**의 잔액이 남았으며, 지출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음.

▸ 청소과의 자원 재활용 촉진 및 재활용품 적정 처리비 **2천7백만원**

▸ 도로과의 매수청구 토지보상사업비 **1천7백만원**

▸ 보건의료과의 방역소독사업비 **1천5백만원**

▸ 보건의료과의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**1백만원**이 지출됨.

---

7) 제47조(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 이체)

② 지방자치단체의 기구·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이나 그 밖의 사항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그 예산을 상호 **이체(移替)**할 수 있다.

※ 예비비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 [8] 및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[9]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되는 것으로, 예비비의 지출은 폭우·태풍 등 전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나 예산초과 지출 충당에 국한하여 집행해야 함.

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은 이월총액 **119억5천6백만원**임.

○ **명시이월** 사업비는 24개 사업으로 **90억7천8백만원**이 이월되었음.

◂ 주요내역으로는

-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신축 사업비 35억1천만원 이월
-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관련 사업비 총 21억1천6백원 이월

○ **사고이월** 사업비는 22개 사업으로 **28억7천8백만원**이 이월되었음.

◂ 주요내역으로는

- 군자동 어린이안전 보행환경 개선 사업비 4억8천9백만원 이월
- 자양전통시장 진입로 환경개선사업비 2억9천4백만원 이월
-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및 물품지원 사업비 2억7천9백만원 이월
- 광진 미래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용역 사업비 2억6천9백만원 이월

---

8) 「지방자치법」 제129조(예비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.

② **예비비의 지출**은 **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** 한다.

9) 「지방재정법」 제43조(예비비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회계(교육비특별회계는 제외한다)의 경우에는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·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.

※ **이월[10]예산 중 명시이월은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이 가능하나 사고이월은 기간 연장이 불가능하므로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도 조속한 추진으로 예산이 불용 또는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,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과 연내 집행 가능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.**

🟦 **기금결산현황**은 자활기금 외 7개 기금으로

당해연도 조성액은 **22억1천9백만원**이며,

이 중 사용액은 **21억6천2백만원**으로

당해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5천만원이 증가한

74억9천5백만원임

나) 특별회계

🟦 **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·세출 결산**

○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**5억7천7백만원** 중 100%인 **5억7천7백만원**을 수납하였으며,

---

10) **제50조(세출예산의 이월)**

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**명시이월비**로서 세입·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**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**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② 세출예산 중 **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**의 금액은 **사고이월비(事故移越費)**로서 **다음 회계연도에 이월**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1.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
2.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3. 공익·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4.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

○ 세출은 예산현액 **4억2천4백만원** 중 98.7%인 **4억1천9백만원**이 집행되었음.

주차장특별회계 세입 · 세출 결산

○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**227억7천9백만원** 중 64.0%인 **146억원**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**79억3천만원**이 발생함.

▸ **세입금 미수납액**은 무재산, 행방불명, 납세태만, 폐업 또는 부도, 국외이주, 소송계류 등으로 **총 79억3천만원8**이 발생함.

○ 세출은 예산현액 **145억3천9백만원** 중 55.4%인 **80억5천1백만원**이 지출되었으며, **64억6천만원**의 집행잔액이 남았음.

세입금 불납결손액 내역은 2억7천3백만원으로 시효가 소멸된 금액임.

예산전용 내역 : 1건(주차장특별회계)

▸ **교통지도과**의 50+ 캠퍼스 지하층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사업 관련 서울시로 구 분담금을 직접 교부하기 위한 금액 **1억9천만원**

종합검토의견

- 본 『2018 회계연도 일반 · 특별회계 세입 ·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』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34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라 집행부가 한 회계연도 동안 예산을 집행한 뒤, 그 내용에 대하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회계검사를 받은 후, 사후 의회의 승인 절차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 받음으로써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임.

- 따라서 이번 결산심사 시 예산전용, 사고이월, 불용액, 예비비 지출 등 분야별로 검토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하고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 후, 2020년도 예산 편성 및 심사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사전에 사업의 규모, 시기, 집행상황, 사업효과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세밀하고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.